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조례안 제 안 설 명

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 양민규 의원
입니다.

- □ 「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・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□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□ 본 조례는 2013년 2월 5일 「교권 예우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으로 그동안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 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, 조례에 위

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이와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□ 현재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 칙이기에 불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폐지하여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
- 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,
 -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.
 -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